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2-22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2. 2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위원회 회의(안 제6조)
- 라. 위원회의 직원(안 제7조)
- 마.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(안 제8조)
- 바.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사. 위원회 위원 등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아.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(안 제11조)
- 자. 운영세칙(안 제12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1. 27. ~ 2. 16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5)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(2022. 2. 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당선인”이란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2. “구청장직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)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구의 조직·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
2.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
3.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,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직원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
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 등 준수사항) 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위원회 활동 결과보고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·직위, 예산 사

용내역,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8조(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)에 따라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
- 안 제9조(수당 등)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직원과 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
- 안 제11조(위원회 활동 결과보고)에 따라 백서 제작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우리구 「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정우열(02-3153-8509)